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4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김남희 · 이주희 · 양부남
김영환 · 임오경 · 이수진
박용갑 · 강준현 · 박희승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u>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u>의 설치) ① <u>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u>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u>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u>를 둔다. <u><단서 신설></u> <u><신설></u>	제11조(<u>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u>의 설치) ① <u>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u>----- ----- ----- ----- ----- <u>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u>-----. <u>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u>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② <u>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u>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u>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u>----- -----.
--	---